
등록제 개편 관련 공청회

2019. 1.



고 용 노 동 부



사단
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Korea Central Council of Social Enterprise

목 차

» 발제 1

- ▶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방향 3

» 발제 2

- ▶ 등록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11

» 지정토론

- ▶ 강 대 성(사회적협동조합 SE바람 이사장) 23
- ▶ 심 옥 빈(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25
- ▶ 윤 봉 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27
- ▶ 장 대 철(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교수(경영공학박사)) 29

등록제 개편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19.1.24(목), 10:00~12:0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
- (참석자) 당사자조직·현장 네트워크, 전문가, 사회적기업, 관계부처 등 약 100여명
- (논의주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
- (발제) 1.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방향(고용노동부)
2. 등록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길현중, 노동연)
 - ※ 좌장 : 변형석(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 지정 토론(4명)
 - 강대성(사회적협동조합 SE 바람 대표이사)
 - 심옥빈(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 윤봉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 장대철(KAIST 사회적기업 MBA 과정 교수(경영공학박사))

□ 순 서(안)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9:50-10:00	○ 티타임('10) * 2층 VIP실	● 주요 내빈
10:00-10:05	○ 모두 말씀('5)	● 고령사회인력정책관
10:05-10:40	○ 발 제 - (1)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방향('15) - (2) 등록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20)	<좌장: 변형석> ● 발제(1) : 사회적기업과장 ● 발제(2) : 길현중 연구위원(노동연)
10:40-11:00	○ 지정 토론('20) : 토론자(4명) * 각 5분	
11:00-11:55	○ 자유 토론('40) ○ 청중 질의('15)	
11:55-12:00	○ 마무리	●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행사 진행 : 고용노동부

【 발 제 1 】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 방향

1. 그간의 경과

-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재정·세제** 등 집중 지원하여 **적극 육성**, 10여 년간 성장기반을 다짐
 - * '07년 55개소 2,539명 고용 → '18년 2,122개소 45,522명 고용(취약 27,589명)
 - * '17년 총 매출액 3조5,530억, 영업이익 발생기업 1,008개소, 월평균임금 162만원

- '07년 법 제정 당시 바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가운데, '10년대 들어 인증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취지의 **등록제로의 전환** 요구가 더욱 확산·증대

- 인증요건이 지원과 연계됨에 따라 **까다롭고**(지속가능성 중심 판단),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일자리제공형 약 70%)는 문제 제기
 - * “인증제가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소셜벤처처럼 사회적미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은 현행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며 인증유형을 맞추기 쉬운 기업만 진입하는 효과”(16.12월, 토론회)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 확대·우대** 등에 힘입어 **창업·진입 수요 증가** 예상

*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2천→5천만원, '19),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 반영, 도시재생·친환경·사회서비스 등 관련 정부·지자체 사업에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구분(시행)	사회적기업('07년)	협동조합('12년)	자활기업('12년)	마을기업('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중복)	2,126개	14,485개 (233개)	1,092개 (179개)	1,514개 (45개)

※ 소셜벤처(500여개 추정)

- 법 제정 10년이 된 현재, 등록제 전환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회문제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 제3차 기본계획('18.11월 발표)에 등록제 개편을 포함
- 한편, 질적 수준 하락, 정부지원만을 쫓는 **偽裝** 사회적기업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보완대책 병행 추진**

2. 등록제 도입 개편 방향

- (기본 방향) 현행 인증제 요건을 완화하여 등록 요건을 설정*하고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 현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제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기존 인증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개편할 필요

-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평가 기능도 강화

◆ 창의·혁신형 사례(未 인증 지정 기업)

- * (카우카우) 우유로 점토 등 친환경 교구 제조('16.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
- * (케이오에이) 캐시미어(몽골) 등 공정무역소재로 제품생산·판매('15. 육성사업)
- * (필더필) 공연 기획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15.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

1] 인증제(고용부장관, 7개 요건) → 등록제(시·도지사 위임, 2개요건 폐지)

-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고려, 시·도지사에 등록 권한을 위임, 등록증을 교부하는 방식 추진
 - 등록증 대여·양도 불가, 폐업·등록 취소 시 시·도지사에 반납, (시·도지사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 현황 보고)
- 등록요건은 현행 인증요건 중 조직형태 등 기본적 사항,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은 유지하되, 실적요건은 폐지

2] 사회적기업 정의 현실화

- 취약계층 일자리(68.6%)·사회서비스(6.2%, 혼합 9.4%), 지역사회 공헌(4.8%) 외에 기타형(11.0%)도 인증*해오고 있으나, 활성화 미흡
 - * 기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을 판단하여 인증(영9조4호)
- 또한 국제공헌(공정무역), 공유경제(쉐어하우스), 기술기반 벤처 등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가의 인증 장벽이 높고* 지원도 미흡
 - * 인증제가 취약계층 지원 부분을 강조함에 따라 공동 창업, 1인 기업 등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원천적으로 인증이 불가

○ 이에 사회적기업의 정의·목적(법2조·8조)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가하여 명확화하고,

- 재정지원도 판로·금융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성장 생태계 조성과 자생력 강화 추진

·(법2조 개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밀줄’ 정의 추가

< 현행 인증·지정 요건 및 등록제(검토안) 요건 비교 >

구분	現 인증	現 예비	가장 완화한 형태	검토안	사유
기본 요건	①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동일	유지	계약·정부지원 책임소재 등 고려할 때 법인 형태 유지 필요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동일	동일	유지	
징표적 요건	③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동일	폭넓게 인정	목적 정의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요건
	④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6월 내 1회 이상 회의	X	X	유지	* 마을기업도 ‘공동체성’ 요건을 두고 주민참여 의사결정구조 점검
	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	동일	X 혹은 1/2	유지	* 특히 공공조달 등만을 목적으로 한 偽裝 사회적기업 방지에 필요
실적 요건	②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1개월 이상) *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완화	X	일부 폐지	無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진입 불가 → 非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인정 필요 (일자리제공형은 3명 유지)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매출액: 노무비의 50% <습> 이상) * 수익성·안정성·성장성 등 고려無	X	X	폐지	현재까지는 지속가능성 중점 검토 → 등록지원 분리라면 실적과 무관하게 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 * 예비, 창업팀, 소셜벤처 경연입상팀, 클라우드 펀딩 기업 등 진입 가능

③ 평가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

☞ 등록기업 평가(2단계)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도 차별화

○ 등록기업은 기존의 ① 사업보고서(매년 1회 고용부에 제출), ② 경영공시(매년 1회) 외에 ③ 기업평가(유효기간 1년 혹은 2년)를 받게 됨

- 평가된 “사회적기업평가보고서”에 따라 일정기준(절대평가) 이상에만 재정·판로·금융·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부처간 협의·통일)

* 「사회적기업평가」를 구성(19.上), 경제적·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실시(19.下부터 시범 목표) → 기준 미달 기업(現 예비수준 미달) 지원 시 사유서 작성, 공공구매 실적 인정 제외 등

○ 기업 평가는 '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현재의 평가지표를 정교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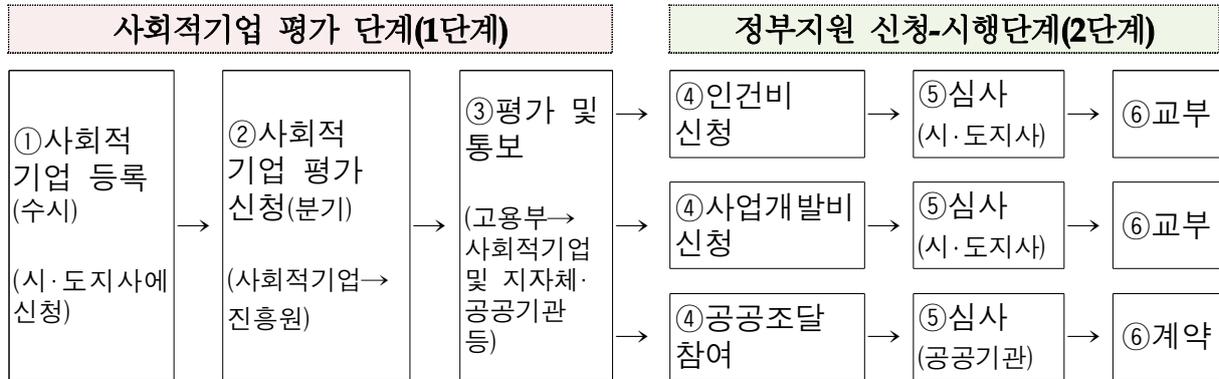
< 現 지표 >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사회적 성과	조직 미션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사업 활동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조직 운영	사회목적 재투자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운영의 민주성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근로자 지향성	8. 근로자 임금수준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경제적 성과	재정 성과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1. 매출성과
			12. 영업성과
		노동성과	13. 노동생산성
혁신 성과	기업 혁신	혁신성	1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에 관한 지표를 강화하여 偽裝·부실 사회적기업 판별에 주로 활용

- 이후, 인건비, 사업개발비, 구매, 금융 등 사업별 목적과 사회적 성과를 반영한 각각의 심사안을 마련하여 지원 여부·수준 평가

* 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의 등록 사회적기업은 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예정



- 등록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1회(4월)로 축소하고, 기재 항목도 영업활동 유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간소화

4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 등록기업 중 정부지원·공공조달에 참여가 어려운 초보단계 기업 (예: 예비지정 前 창업성공팀)은 컨설팅, 비즈니스 고도화 등 우선 경영 내실화 지원 확대

- 중기부·금융위 등 타 부처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상품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판로·금융 지원 등 제공

* (예)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TIPS)·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중기부), 사회적가치 신용 반영·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기금조성 (금융위) 등

- 기업평가 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공공부문의 판로, 금융지원 시 우선 추천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5 지역, 민간 네트워크 역할 강화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등 민간의 역할 확대

- 사회적경제 규모화 및 기업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컨소시엄,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

- 그밖에 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등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소통창구 운영**
 - * 공식적인 의견 전달 채널 구축·상시화(당사자조직들이 既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연 4~5회) 등을 활용)
 - 또한 부실·偽裝 사회적기업이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평가 제도 외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자정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할 예정
-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시·도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등록기업별 현황, 고용·지원 이력 등 파악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진흥원) 재구축 추진(’20년)
 - 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공동 워크숍,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업무의 유기적 연계 촉진
- **전달체계 정비**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사회적기업 평가위원회*로 재편
 - * 진흥원 내 사회적기업평가 사무국을 설치하고,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평가를 위한 심사 서류 접수, 현장 실사(필요시) 등 업무를 지원
 - 진흥원 내 사회적경제 지원 및 평가 관련 조직 확대·강화
 - * 사회적경제실 신설(’19. 15명)

3. 향후 일정

- 의견수렴: 육성전문위(’18.12.20), 자치단체(’18.12.26~27), 현장전문가(’19.1.10)·공청회(’19.1.24) 등
- 입법 일정: 입법예고(40일, 1월말~3월) → 국회제출(8월)
 - ※ 개정안 시행시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 ※ 경과조치: 법 개정 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원 심사 기준을 적용

【 발 제 2 】

**등록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등록제로의 개편에 따른 환경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목차

- 인증제
- 사회적기업 인증제
-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변화
-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 등록제의 법적 성격
- 등록제(안)과 문제해결 가능성
- 제기 가능한 논점들(일부)
- 향후 정책방향

인증제

• 인증

- 인증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법적 요건 하에 어떤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음(최종권, 2017)
- standard.go.kr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
- 총 174개 인증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고용노동부 총 4개

제도명	관련법률	분야	최초시행일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2009.1.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기타	2007.10.29.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2009.1.1.
S마크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1996.12.1.

자료: standard.go.kr

사회적기업 인증제

• 총 7가지 요건에 따라 인증 (socialenterprise.or.kr)

-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익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것



인증사회적기업 현황

- 2018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 현재 유지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신청	인증	현재유지
계	3,980	2,473	2,122
2007	166	55	36
2008	285	166	112
2009	199	77	59
2010	408	216	148
2011	224	155	115
2012	317	142	125
2013	469	269	215
2014	481	265	227
2015	427	295	267
2016	326	265	254
2017	306	256	253
2018	372	312	311

자료: socialenterprise.or.kr

-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1,277개소, 60.2%),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1,426개소, 67.2%)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변화

-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문제점 (권순원 외, 2016에서 정리한 기존 연구 및 발표자 생각)
 - 사회적기업 확장을 저해
 - 사회적기업 다양성을 저해
 - 인증 기준 및 행정절차 복잡
 - 인증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 해결 가능한 대안(일부)
 - 인증제의 개편: 보다 많고 다양한 기업이 현재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인증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
- 정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서 이미 2차 계획에도 언급되었던 등록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2.12.): 다양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일부

- 다양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 향후 사회적기업 확산·발전 형태,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여 등록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등록제에 부합하는 사후관리 시스템,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 검토

-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1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등록제 전환

- ① 법개정을 통해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하되,
 - ② 단기적으로 현행 인증제도의 세부 요건을 완화하여 연착륙 지원

등록제의 법적 성격

- 영업규제방식으로서의 허가, 등록, 신고 (권순원 외, 2016에서 정리한 기존 연구)

구분	내용	출처
허가	실질적 심사가 허용됨. 조건부과 등 재량행위성이 허용됨. 따라서 실질적 심사가 허용되는 '등록'이라도 '허가'로 보아야 함.	류광해(2015), 최우용(2014)
등록	사실상 허가제. 다만 등록제는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많고 요건 심사도 완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완화된 형태의 허가제' 임	류광해(2015)
	신고보다는 엄격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규제형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나선경·박민(2013)
	허가보다 완화된 규제이며, 등록은 위장 심사, 허가는 실질적 심사로 구분됨	이상천(2010)
신고	신고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내지 '자체완성적 행정행위로서 신고'를 의미	류광해(2015), 나선경·박민(2013)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처분성을 갖게 됨. 등록보다는 규제가 완화된 형태임	이상천(2010)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가능해져 등록 또는 허가과 같아짐. 완화된 허가제 또는 완화된 등록제로 파악하기도 함	나선경·박민(2013), 조만형(2010)

등록제(안)과 문제해결 가능성_1

- 사회적기업 확장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주 목적)
 - 등록제 도입의 일환으로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에 사회문제 해결 유형을 포괄: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명시
 - 다만, 기존에도 원칙적으로는 기타형을 두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포괄
 - 실적요건 제외: 1명 이상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등록제 도입으로 현행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폐지: 현행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에도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에 대한 요건은 존재
 - 다만, 현행 예비 사회적기업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등록 해야함: 형식적으로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설계된 등록제로의 전환은 더 많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기존에는 인증 받을) 가능성을 높임: 특히, 사업 시작 단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새로이 등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힘.

등록제(안)과 문제해결 가능성_2

- 인증의 복잡성 및 시간·비용 소모를 감소시키는가? (부수적 목적)
 - 실적요건 제외: 1명 이상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실제로는 1) 조직형태를 확인하는 서류와 2) 사회문제해결목적, 민주적의사결정구조, 배분가능한 이윤 사회적목적 사용 내용이 포함된 정관만 있으면 등록 가능해, 기업별 복잡성이나 행정 비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시도나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지원 기업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추가고려사항]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기업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평가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평가,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수준 리포트 제출 과정을 1-2년마다 수행필요
 - 평가는 사회적성과지표(SVI)중심 14개 지표 활용
 - 인증제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절차이며, 인증은 1회성 제도인데 반해 필요 시 기업별로 복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회적성과지표는 정성 평가가 포함된 제도임.
- 기업(당 혹은 기업 전체)과 정부입장에서 기존 제도와 제안제도 중 어떤 제도가 복잡성 및 시간·비용 소모 관점에서 효율적 제도인지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려움.

제기 가능한 논점들(일부)_1

- 왜 등록제인가? 등록제가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가?
 - 예를 들면, 사회적목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떠한가?
- 등록제가 얼마나 사회적기업의 실제적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 다른 제도의 개선,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가 확대 등에 대한 노력없이 등록제가 얼마나 실제적 사회적기업 양과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위장사회적기업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 즉, 사회적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을까?
- 등록제 도입 시 정부지원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인가?
 - 특히, 초기영업활동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제기 가능한 논점들(일부)_2

- 기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재 안: 자동 등록기업으로 등록, 기존 재정지원 대상자들은 해당 지원이 종료되는 기한까지 그대로 지원
 - 현재 계획되는 수준 정도로 충분한 것인가?
-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가?
 - 예를 들면, 인증 서류 간소화 등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현재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
- 등록제로의 변화가 사회적경제 전체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가?
 - 다른 사회적경제주체, 지원제도(창업, 공공구매, 금융지원 등 포함), 국민의 인식,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향후 정책방향(일부)_1

- 등록제 관련 제도 변화와 별개로 다양한, 그리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 등록제는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함.
 - 등록제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 등록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확대와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이 존재하기에, 이들을 통해 현행 인증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인증제 자체의 개편, 사회적기업 진출이 부족한 사회문제 해결 영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 등록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 탐색 및 설정이 필요함.
 - 인증제를 등록제로 변화시킨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을 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제가 사회적기업 확산이나 다양성 확대에 바람직한 제도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것임.
 - 그렇다면,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등록 요건의 점진적 축소, 협동조합과 같이 신고제로의 전환 등

향후 정책방향(일부)_2

- 사회적기업 브랜드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함.
 - 등록제 도입 시 위장사회적기업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브랜드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할 우려도 있음.
 -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앙단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해, 위장사회적기업에 대한 단호한 등록취소절차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부터의 적극적 의견수렴이 필요함
 -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인증되어 현재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에 주체로 활동한 기업 들임.
 - 등록제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기존 사회적기업들로부터의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형평성에 부합하면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등록제도 세부 설계가 필요함.

향후 정책방향(일부)_3

- 등록제 준비 과정 시 사회적경제 유관 주체와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필수적
 -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변화는 사회적기업 군의 특성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 유관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이러한 변화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과정 없이는 여러 상황에서(예: 사회적경제주체들에 제한된 제한경쟁입찰 등)에서 예측불가능한 오해 등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에 제도 변화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수적
 - 이러한 노력은 등록제의 도입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 등록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지원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노동부)은 일정수준의 영업활동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인건비 지원에 집중해 왔음.
 - 등록제는 영업활동 경험이 없는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기업의 포함이 예정되어 있기에 필요시 새로운 형태의 정부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hyeonjongkil@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지 정 토 론

등록제 도입관련 공청회 토론자료

강대성

(사회적협동조합 SE바람 이사장)

1.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이후 초기 사회적기업 정착에 큰 기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양적 성장을 가져왔음.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아서 소셜벤처등 젊은 창업가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B-Corp인증을 받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
2. 정부가 추진하는 등록제는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조직에게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인정을 부여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제도 라고 생각함. 등록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 왜 등록제를 도입하는지에 대한 취지가 분명해야 함.
 - 등록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기업 양적확대는 가능하나 양질의 기업이 등장 할 수 있도록 등록 단계에서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등록제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은 낮아지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가치가 큰 기업을 엄선하여 집중지원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자원의 낭비가 아닌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등록제 도입에 따른 등록서류 간소화방안이 필요
(온라인 등록 가능한지?)
 - 또한 협동조합이 숫자는 많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조합 수는 적은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제 도입에 다른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이제는 사회적기업의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퇴출시스템을 정비**하여 나가야 함.
- 등록제 도입에 따라 많은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들의 진입이 예상됨. 이에 따라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편**이 필요함.
(중간지원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등록이후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별 기능수행)
- 영리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가는 선순환 구조는 바람직하지만 **체리피커형의 기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록후 공공구매시장 등에서 혜택을 누린 후 자진 반납할 경우)
-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관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중요한데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의 필수 근무연한 설정** 등의 방법은 가능한지?
- 등록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기업 형태 5가지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듦. 따라서 **해당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을 스스로 명시하도록** 하고 해당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 드림.

‘사회적경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물꼬를 ?

- 새로운 법인격 도입과 관련하여 -

심 옥 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10년만에 등록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에 방점을 찍은, 또 인증=지원의 등식으로 이해되는 인증제도는 확장보다 통제가 우선시 되었다는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의 현장에서는 등록제로의 전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부디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와 이해로 제도가 완성되길 바라고,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 사회적기업 확장성 저해, 다양성 저해, 기준 및 행정절차 복잡, 비용등으로 제기되었는데, 등록제가 문제해결의 대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12년차의 사회적기업가(다사랑보육서비스)로, 그리고 취약계층(고령자와 경력단절여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행 인증제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오늘은 등록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인격이 신설되어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사회적기업을 언제까지??

-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기업도 아니고, 비영리기업도 아니다.’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조차도 정체성 규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 필요

■ 사회적기업은 영리다??

-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7가지 요건중 -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등

■ 현재 설계된 등록제로의 전환은 → 더 많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가능성을 높임(발제문)

- 사회적목적사업이 주된 사회적기업들이 현재는 대부분 상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확장성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기업으로 회귀 가능하게 하는 구조

(소위 위장사회적기업/ 먹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는 총선, 대선과정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의 하나로 새로운 법인격도입 필요성 제시하고, 공론화 함.

(2016년 10월 28일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신설 및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토론회' 개최,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기협은 산하 정책위원회 새로운 법인격도입을 위한 법조문구성작업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진행)

토론 의견

윤 봉 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대부분 그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기업 신뢰성(偽裝 사회적기업 진입에 따른) 훼손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
 - 특히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일구어 온 사회적기업 당사자들과 사회적경제 기업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함.
 - 또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정적 인식, 등록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양적확대 정책 일환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왜 등록제인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지자체(광역, 기초단위 각각의 역할)와 권역 지원기관의 업무 부담(역할 확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전 인력(정원) 증원(현재 광역, 기초단위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자는 1인임), 예산 확보 등 지원책 마련, 그리고 행정과 권역 지원기관 역할 등 지역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록제 개편 추진과정을 볼 때 등록제로의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및 논의 등 공론의 장이 부족해 보임. 향후 지자체 권역 단위로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이는 사회적기업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실적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함.
- 등록기업의 의무(등록유지 요건)는 어떤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
 - 등록제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업보고서(항목 또한 대폭 완화한)로 같음
 - 반면 오히려 퇴출기준 강화 등 등록 사회적기업의 의무(유지 기준)는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음.(경영공시의무화,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부실한 경우 퇴출 등)
- 등록제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각종 지원제도 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등록제=예비사회적기업제도 폐지 → 초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수행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초기 기업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재정지원 정책들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예비,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재설계 해야 할 것임. 등록과 재정지원사업은 엄격 분리한다고 할 때 등록 사회적기업의 최소한 지원제도는 필요한가?, 어떤 수준에서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함.
- 등록제 도입과 제반 지원제도 정비 등 본격 시행을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 되기 전에 법 개정부터 진행되다 보니 우려와 걱정,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사회적기업 등록제와 연관된 다양한 이슈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논의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당사자', '제 사회적경제기업 주체들'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예상되는 우려를 최소화해야 함.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긍정의 답을 할 수 있어야 함.

토론 의견

장 대 철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교수(경영공학박사))

- 여러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인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함. 특히 사회적 기업 관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업의 관점: 자신의 정체성 확인? 마케팅 또는 광고? 정부 지원 조건 충족?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
 - 인증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관리가 용이해지는 점과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다만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져야 하며, 정책에 의한 효과 분석 방법도 미리 마련되어야 함.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책 평가 지표로 등록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그리고 정성적 효과가 포함되어야 함.

- 인증 관련 비용은 목적에 따라서 많아져야만 할 수도 있고 많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인증이 하나의 신호로 작동해야 하거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함
 - 인증 관련 비용의 수준은 인증의 목적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인증 받은 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 인증의 주체가 정부여야만 하나? 민간이면 안 되는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와 기능을 민간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 인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기관의 적합성만을 인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